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해운대구청장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검사기간: 2018년 4월 5일~4월 24일(20일간)
-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서강식(해운대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강동우(세무사)
 - 검 사 위 원: 남정흔(세무사)
 - 검 사 위 원: 이권재(전직 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3
□ 2017년도의 통합결산서 검사 결과	5
□ 시정 및 개선사항	
1.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 관련 예산 집행 현황	26
2.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	27
3.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28
4.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30
5.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32
6.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32
7. 2017년도 성과보고서 상 2016년도 달성성과 수치의 오류 …	33
8.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	34
9. 정책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34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36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2018년 4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해운대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해운대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서 강 식 강 동 우 이 위 원 위 원 남 정 흔 위 워 0] 궈 재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 입	410,960,666,690	439,757,196,660	493,860,690,140	541,985,237,805	577,425,687,320
일반 회계	세 출	363,188,015,600	394,407,575,680	435,500,473,960	457,883,648,960	511,539,209,640
	결산상 잉여금	₹ 47,772,651,090	45,349,620,980	58,360,216,180	84,101,588,845	65,886,477,680
	세 입	20,860,944,556	19,764,073,792	18,159,030,647	22,025,385,928	22,563,773,013
특별 회계	세 출	12,261,391,850	9,807,834,160	8,624,927,980	13,027,451,970	10,091,632,840
	결산상 잉여금	₹ 8,599,552,706	9,956,239,632	9,534,102,667	8,997,933,958	12,472,140,173
	수 입	15,633,807,070	16,395,016,556	17,741,181,217	18,421,008,151	19,521,075,824
기금	지 출	15,633,807,070	16,395,016,556	17,741,181,217	18,421,008,151	19,521,075,824
	결산상 잉여금		0	0	0	0
	세입(수입)	447,455,418,316	475,916,287,008	529,760,902,004	582,431,631,884	619,510,536,157
총계	세출(지출)	391,083,214,520	420,610,426,396	461,866,583,157	489,332,109,081	541,151,918,304
	결산상 잉여금	₹ 56,372,203,796	55,305,860,612	67,894,318,847	93,099,522,803	78,358,617,853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원)

- u	재정상태			재정운영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고
2017년	1,879,086,315,502	35,656,975,287	1,843,429,340,215	502,047,294,458	472,785,620,083	29,261,674,375	
2016년	1,379,176,632,801	33,640,970,442	1,345,535,662,359	500,359,308,409	444,044,143,701	56,315,164,708	
중 감	499,909,682,701	2,016,004,845	497,893,677,856	1,687,986,049	28,741,476,382	(27,053,490,333)	

- 2017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497,893,677,856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7,053,490,333원(48%) 감소하였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0	
공채 b	0	0	0	0	0	
차입금 c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2,520,000,000	1,600,000,000	1,400,000,000	0	0	

 채무가 2016년에 소멸한 것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채무 상환에 기인하였으며, 최근 5년간 채무는 세입증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음.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의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해운대구	산정방식	주의 기준	42 (위7) 7준
채무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0%	<u>지방채무 잔액</u> 총예산	25%초과	40%초과
채무 관리	② 채무상환비 비율	0%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105.0%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141.6%	<u>당해연도 분기말 잔고</u>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 해운대구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음.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다음과 같음.

* 지 방 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 · 세출결산 총괄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계	615,832,100,664	619,510,536,157	541,151,918,304	78,358,617,853
일 반 회 계	575,126,664,610	577,425,687,320	511,539,209,640	65,886,477,680
특별회계	21,184,360,230	22,563,773,013	10,091,632,840	12,472,140,173
기 금	19,521,075,824	19,521,075,824	19,521,075,824	0

	현년도	이월액(D)				
회계별	채무상환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0	21,732,356,060	7,863,557,850	4,655,160,220	6,282,363,614	37,825,180,109
일 반 회 계	0	19,671,295,430	7,293,128,860	4,655,160,220	6,230,943,154	28,035,950,016
특별회계	0	2,061,060,630	570,428,990	0	51,420,460	9,789,230,093
기 금	0	0	0	0	0	0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99,989,460,333원으로 예산현액 596,311,024,840원보다3,678,435,493원이 더 수납 되었음.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6.9%인 521,630,842,48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은 78,358,617,853원임.
- 이중 명시이월비 21,732,356,060원, 사고이월비 7,863,557,850원 및 계속비 4,655,160,2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282,363,61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은 37,825,180,109원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7,825,180,109원임이 확인됨.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75,126,664,610	597,511,413,650	577,425,687,320	3,018,839,230	17,066,887,100
결산확인액	575,126,664,610	597,511,413,650	577,425,687,320	3,018,839,230	17,066,887,100
차액	0	0	0	0	0

- 수납액 577,425,687,320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서 2,299,022,71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6%로 전년도 95.3%보다 1.3%가 증가 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018,839,230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무재산과 시효소멸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77,425,687,320	577,425,687,320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원, %)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율
2017	529,226,037,000	597,511,413,650	577,425,687,320	3,018,839,230	68,285,376,650	△20,085,726,330	0.5%
2016	513,832,629,000	568,600,417,315	541,985,237,805	2,863,534,720	54,767,788,315	△26,615,179,510	0.5%
중감	15,393,408,000	28,910,996,335	35,440,449,515	155,304,510	13,517,588,335	6,529,453,180	0.0%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건수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인한 것이며,
- 수납액은 전년도 541,985,237,805원 보다 35,440,449,515원이 많은 577,425,687,320원이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863,534,720원 보다 155,304,510원이 증가한 3,018,839,230원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75,126,664,610	597,511,413,650	577,425,687,320	3,018,839,230	20,085,726,330
	소계	103,207,000,000	107,286,336,790	104,520,263,250	131,052,310	2,766,073,540
	등록면허세	13,937,000,000	13,223,527,300	13,170,150,010	_	53,377,290
지방세	주민세	5,530,000,000	6,091,040,340	6,046,708,560	_	44,331,780
^ 78^	재산세	82,500,000,000	85,642,849,840	84,235,022,460	_	1,407,827,380
	지방소득세	-	-	_	_	_
	지난년도수입	1,240,000,000	2,328,919,310	1,068,382,220	131,052,310	1,260,537,090
세외수입	소계	32,642,558,000	50,991,425,455	33,671,772,665	2,887,786,920	17,319,652,790
	재산임대수입	65,301,000	320,175,270	280,660,770	_	39,514,500
	사용료 수입	2,801,010,000	2,845,910,290	2,749,352,230	_	96,558,060
경상	수수료수입	9,108,210,000	9,124,788,210	9,101,960,880	_	22,827,330
	징수교부금수입	10,781,388,000	10,744,156,360	10,744,156,360	_	_
	이자수입	1,212,000,000	1,211,731,415	1,211,731,415	_	_
	재산매각수입	150,000,000	154,811,980	154,811,980	_	_
	부담금	1,937,400,000	2,128,441,220	2,088,997,580	_	39,443,640
임시	과징금및과태료등	1,912,181,000	5,983,314,610	2,378,429,210	785,999,590	3,604,885,400
	기타수입	2,625,068,000	2,998,720,830	2,786,654,210	1,690,780	212,066,620
	지난년도수입	2,050,000,000	15,479,375,270	2,175,018,030	2,100,096,550	13,304,357,240
지방교	쿠세	8,367,809,000	8,367,809,030	8,367,809,030	-	_
조정교	부금 둥	41,499,686,000	41,450,936,000	41,450,936,000	-	_
보조금		305,308,023,000	305,313,317,530	305,313,317,530	-	_
보전수약	입둥및내부거래	84,101,588,610	84,101,588,845	84,101,588,845		_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8.1%인 104,520,263,25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3,671,772,665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4%인 8,367,809,030원, 조정 교부금 등은 41,450,936,000원, 보조금 등은 305,313,317,530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29,226,037,000	575,126,664,610	511,539,209,640	31,619,584,510	31,967,870,460
결산확인액	529,226,037,000	575,126,664,610	511,539,209,640	31,619,584,510	31,967,870,460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529,226,037,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5,900,627,610원이 이월
 되어 예산현액은 575,126,664,610원임.
-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2%인 125,534,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일조권 영향평가 용역 수행을 위한 자금 조 달,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외등 및 CCTV 설치비 부족분 충당, 해운대온천 축제 공연 지원 및 소망 등 트리축제 행사 운영비 부족 등임.
-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0.3%인 1,837,972,000원으로서 반여동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원 및 인문학도서관 건립, 조직개편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9%에 해당하는 511,539,209,64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1,619,584,51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9,671,295,4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293,128,860원이며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 공사의 착공 지연 등에 기인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에 해당되는 31,967,870,46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확대에 반한,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이 축소 등 예산 대비 지원 대상자 확보 부족 또는 인건비 과다계상 등에 기인함.

○ 예비비사용

예비비사용액은 76,500,000원임. 주요 내역은 반송2동 동사 소방시설 시정 및 보완 조치 명령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으로 42,131,000원 지원함.

 또한,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한 어구어망 피해자 재난지원금 및 9.11.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자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 관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 한 지출에 대한 사용으로 적절한 대처였다고 판단함.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11,539,209,640	511,539,209,640	0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u	2016년	20	17 회계연도		전년대비증	·감
구 분	지출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457,883,648,960	575,126,664,610	511,539,209,640	89%	53,655,560,680	112%
일반공공행정	19,385,559,800	24,820,304,280	23,865,234,630	96%	4,479,674,830	123%
공공질서및안전	8,038,132,850	20,134,556,800	12,685,830,030	63%	4,647,697,180	158%
교육	3,934,289,790	12,358,552,200	8,008,263,720	65%	4,073,973,930	204%
문화및관광	11,444,218,450	19,043,253,970	14,995,952,090	79%	3,551,733,640	131%
환경보호	19,930,506,070	25,652,931,840	23,171,272,700	90%	3,240,766,630	116%
사회복지	277,468,213,280	307,135,600,580	296,875,489,910	97%	19,407,276,630	107%
보건	11,917,159,490	15,736,293,600	13,948,932,380	89%	2,031,772,890	117%
농림해양수산	4,619,736,420	5,468,540,040	4,584,523,310	84%	△35,213,110	99%
산업 · 중소기업	3,851,510,380	3,569,410,850	3,491,900,630	98%	△359,609,750	91%
수송및교통	14,402,659,450	28,651,439,730	22,647,409,440	79%	8,244,749,990	157%
국토및지역개발	10,316,718,780	16,288,809,720	11,491,236,190	71%	1,174,517,410	111%
기타	72,574,944,200	76,611,970,000	75,773,164,610	99%	3,198,220,410	104%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96,875,489,910원, 기타 75,773,164,610원, 일반공공행정 23,865,234,630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19,407,276,630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교육부문으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1,184,360,230	32,597,233,637	22,563,773,013	522,889,850	10,033,460,624
주차장	15,900,369,230	25,681,620,370	17,320,112,620	331,910,830	8,361,507,750
의료급여기금	1,030,403,000	2,712,060,911	1,120,763,181	190,979,020	1,591,297,730
지하수관리	1,732,146,000	1,658,383,950	1,642,313,060	_	16,070,890
기반시설	319,662,000	319,660,150	319,660,150	-	-
주거환경개선사업	243,040,000	254,404,496	189,820,242	-	64,584,2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58,740,000	1,971,103,760	1,971,103,760		
결산확인액	21,184,360,230	32,597,233,637	22,563,773,013	522,889,850	10,033,460,624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2,563,773,013원은 예산액의 106.5%로서 1,379,412,783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9.2%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2%가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522,889,85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8%인 10,033,460,624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부산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비 1,808억원(시비118/민자1,690) 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건립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 2017년 1,958,74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민의 숙원 사업인 초록공원 내 초록관 증축, 수영강변 LED 가로등 교체, 반송동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조명등 설치, 재송동 산책로 공원등 설치, 송정 삼거리 이면도로 가로등 교체 등 우리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금 사용의 좋은 사례임.

○ 불납결손처분

○ 522,889,850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음.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2,563,773,013	22,563,773,013	0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9,265,322,000	21,184,360,230	10,091,632,840	2,631,489,620	8,461,237,770
주차장	13,981,331,000	15,900,369,230	8,426,844,680	1,251,627,620	6,221,896,930
의료급여기금	1,030,403,000	1,030,403,000	1,001,889,060	-	28,513,940
지하수관리	1,732,146,000	1,732,146,000	52,305,940	-	1,679,840,060
기반시설	319,662,000	319,662,000	-	_	319,662,000
주거환경개선사업	243,040,000	243,040,000	47,692,020	-	195,347,9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58,740,000	1,958,740,000	562,901,140	1,379,862,000	15,976,860
결산확인액	19,265,322,000	21,184,360,230	10,091,632,840	2,631,489,620	8,461,237,77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9,265,322,000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919,038,23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184,360,23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 사실은 없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7.6%에 해당하는 10,091,632,840원이었으며 이월액 중명시 이월은 2,061,060,630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립사업의 공사기간부족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9%에 해당하는 8,461,237,770원이었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091,632,840	10,091,632,840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음.

계속비이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비고	
합 계	4건	4,655,160,220	65건	21,732,356,060	30건	7,863,557,850		
일반회계	인문학도서관 건립 외 3건	4,655,160,220	홍보관 조성 외 60건	19,671,295,430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외 28건	7,293,128,860		
특별회계		_	주 택 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사업 외 3건	2,061,060,630	구 일 공 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0건	570,428,990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기금현황

(단위: 원)

	7111 그나	ĭ	강해연도 중감약	4	다케어드마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7,497,601,446	1,087,326,258	2,023,474,378	936,148,120	18,584,927,704
식품진흥기금	340,005,920	△26,890,080	52,068,800	78,958,880	313,115,840
사회복지기금	3,351,115,793	△148,143,290	58,973,780	207,117,070	3,202,972,503
자활기금	1,234,281,983	234,847,454	254,362,454	19,515,000	1,469,129,437
양성평둥기금	508,227,180	△3,104,446	8,395,554	11,500,000	505,122,734
재난관리기금	4,074,076,816	632,564,610	913,424,420	280,859,810	4,706,641,426
신청사건립기금	7,687,848,304	431,552,920	431,552,920	_	8,119,401,224
유나장고생약	302,045,450	△33,500,910	304,696,450	338,197,360	268,544,540

○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액 현재의 조성액 17,497 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23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936백만원을 공 제한 18,584백만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i>조</i> 성액	14,324,333,570	14,889,013,070	15,825,293,576	16,909,417,927	17,497,601,446	5.5%
당해연도 <i>조</i> 성액	1,309,473,500	1,506,003,486	1,915,887,641	1,511,590,224	2,023,474,378	13.6%
당해연도 사 용 액	744,794,000	569,722,980	831,763,290	923,406,705	936,148,120	6.4%
당해연도말 조성액	14,889,013,070	15,825,293,576	16,909,417,927	17,497,601,446	18,584,927,704	6.2%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최근 5년간 평균 6.2%p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지금 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7.4%p 낮기 때문이다.

기금운용현황

(단위: 원)

	전년도			수 입				당해연
구 분	이월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지출	도말 현재
합계	_	1,443,095,000	18,816,540	17,497,601,446	289,876,064	271,686,774	19,521,075,824	1
식품진흥기금	-	-	_	340,005,920	5,095,370	46,973,430	392,074,720	-
사회복지기금	-	-	11,316,180	3,351,115,793	47,657,600	-	3,410,089,573	-
자 <u>활</u> 기금	-	-	7,500,360	1,234,281,983	22,148,750	224,713,344	1,488,644,437	-
양성평등기금	-	-	_	508,227,180	8,395,554	_	516,622,734	-
재난관리기금	_	843,095,000	_	4,074,076,816	70,329,420	_	4,987,501,236	1
신청사건립기금	-	300,000,000	_	7,687,848,304	131,552,920	-	8,119,401,224	-
सिराक्ष्यक्ष	-	300,000,000	_	302,045,450	4,696,450	-	606,741,900	-
		1,443,095,000	18,816,540	17,497,601,44	289,876,064	271,686,774	19,521,075,82 4	

○ 검사결과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지출액은 19,521,075,824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현	중감(-)
T	ゼ	2017	2016	금 액	비 율
자	산	1,879,086,315,502	1,379,176,632,801	499,909,682,701	36.2
I. 유	동 자 산	127,563,543,963	145,743,295,120	△18,179,751,157	△12.5
II. 투	자 자 산	3,807,727,970	4,094,827,970	△287,100,000	△7.0
Ⅲ. 일	반 유 형 자 산	158,376,657,777	147,079,766,750	11,296,891,027	7.7
Ⅳ. 주	민 편 의 시 설	336,233,195,116	262,979,433,306	73,253,761,810	27.9
Ⅴ. 사	회 기 반 시 설	1,251,112,639,576	817,116,835,608	433,995,803,968	53.1
VI. 7] 1	타비유동자산	1,992,551,100	2,162,474,047	△169,922,947	△7.9
부	채	35,656,975,287	33,640,970,442	2,016,004,845	6.0
I. 유	동 부 채	14,550,228,035	12,544,847,347	2,005,380,688	16.0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0
III. 7] 1	타비유동부채	21,106,747,252	21,096,123,095	10,624,157	0.1
순	자 산	1,843,429,340,215	1,345,535,662,359	497,893,677,856	37.0
1. 고	정 순 자 산	1,737,230,786,299	1,218,069,159,676	519,161,626,623	42.6
II. 특	정 순 자 산	19,223,393,667	18,169,898,186	1,053,495,481	5.8
Ⅲ. 일	반 순 자 산	86,975,160,249	109,296,604,497	△22,321,444,248	△20.4

○ 2017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자산은 1조 8,790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3,791억원보다 4,999억원(36.2%)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편의시설(27.9%) 및 사회기반시설(53.1%) 조성과 과년도 누락분 공유재산과 물품 일제정리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반면, 2017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부채는 356억원으로 전년도의 336억원
 보다 20억원(6%)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단기예수보관금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임.
- 또한, 2017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순자산은 1조 8,43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978억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과년도 누락된 공유재산의 입력 등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의 증가로 인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원, %)

	 구		1	 란		2017	2016	전년 대비 중	감(-)
	7		ī	<u> </u>		2017	2010	금 액	비 율
I.	사 (업 가	순 -	원 나	가)	67,363,350,423	48,393,700,495	18,969,649,928	39.2
가.	사	업	총	원	가	380,759,437,453	353,529,810,315	27,229,627,138	7.7
나.	사	업		수	익	313,396,087,030	305,136,109,820	8,259,977,210	2.7
II.	관	리	운	영	削	81,385,475,056	78,471,109,958	2,914,365,098	3.7
Ⅲ.	비	배	분	비	용	10,640,707,574	12,043,223,428	△1,402,515,854	△11.6
IV.	비	배	분	수	익	6,508,720,567	15,428,648,032	△8,919,927,465	△57.8
V.	재 (I			순 원 Ⅲ -		152,880,812,486	123,479,385,849	29,401,426,637	23.8
VI.	일	반		수	익	182,142,486,861	179,794,550,557	2,347,936,304	1.3
VII.	재 (정 (V	운 영 -	명 결 VI	과)	△29,261,674,375	△56,315,164,708	27,053,490,333	△48.0

해운대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808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134억원을 차감한 674억원이며,총 122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노인복지 지원' (89억원)와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82억원)이었음.

- 또한,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73억원과 기타 관리운영비 4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유형자산 감가상 각비 67억원과 대손상각비 28억원, 기타비용 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16억원, 임시세외수익 33억원, 기타수익 16 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해운대구의 재정운영결과는 293억원으로 전년도의 563억원보다 270억원(48.2%)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순원가는 189억원 증가하였으나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이 각각 14억원(11%), 89억원(57.8%) 감소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 해운대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 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음.
- 해운대구는 본 회계연도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해운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85개)-단위사업(1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p)

		정책사	업목표	성과	지표 목표달성	여부
구분	전략목표수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 <i>률</i> (B/A)
계	9	85	177	162	15	91.5
기획조정실	1	4	7	6	1	85.7
감사담당관	1	1	1	0	1	0
행정관리국	1	18	40	37	3	92.5
일자리산업국	1	19	38	36	2	94.7
주민생활지원국	1	21	38	32	6	84.2
안전도시국	1	13	28	28	0	100
의회사무국	1	1	4	4	0	100
직속기관	1	3	8	7	1	87.5
사업소	1	5	13	12	1	92.3

- 해운대구의 성과지표 달성편황을 살펴보면, 안전도시국 등 2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조정실은 85.7%, 감사담당관은 0%, 행정관리 국은 92.5, 일자리산업국은 94.7%, 주민생활지원국은 84.2%, 직속기관은 87.5%, 사업소는 92.3% 달성하였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 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정책사업목표와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멀어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정책사업에 따른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해 보이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도 확인되었다. 또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목표치 수정도 일부 발견되었으며 성과분석에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130%이상)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868,093,950	224,411,050	439,479,540	5,653,025,460
ę	보반회계	3,666,512,850	4,415,700	39,628,630	3,631,299,920
Ē	투별회계	1,530,415,880	154,852,920	284,950,090	1,400,318,7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30,415,880	154,852,920	284,950,090	1,400,318,710
7]금	671,165,220	65,142,430	114,900,820	621,406,830
	사회복지기금	265,080,940	27,642,070	31,316,180	261,406,830
	자활기금	406,084,280	37,500,360	83,584,640	360,000,00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68,093,950원으로 확인되었음.

(2) 채무

○ 검사결과 2016회계연도에 채무전액을 상환하여 전년도말 채무액 0원임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

	7 H	전년도말	당해연도	E 증감액	당해연도말
	구 분	현재액	증	감	현재액
	합 계	741,467,397,703	591,052,914,202	43,120,165,505	1,289,400,146,400
	공공용재산	209,547,507,964	51,895,291,170	8,812,176,353	252,630,622,781
행)	공용재산	512,708,225,769	538,240,266,182	33,921,882,722	1,017,026,609,229
정 재	기업용재산	0	0	0	0
산 산	보존재산	0	0	0	0
	소 계	722,255,733,733	590,135,557,352	42,734,059,075	1,269,657,232,010
	일반재산	19,211,663,970	917,356,850	386,106,430	19,742,914,390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원)

7 H	기내드마침케세	당해연도	: 중감액	당해연도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취득	처분	현재액
수 량	929	247	68	1,108
금 액	5,741,933,806	2,215,562,735	633,555,347	7,323,941,194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582,007,388원이 증가한 7,323,941,194원
 이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T &	소 계	집행액	집행잔액	소 계	집행액	집행잔액
좌동진출 램프설치	1,000,000	0	1,000,000	1,000,000	58,244	941,756

- 해운대구 좌동 장산로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 및 부・울 고속도로 차량의 혼잡으로 기인한 장산로의 차량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좌동 신시가지 차량 진입 시간을 단축코자 '좌동 진출램프 및 연결 램프 설치사업'을 추진함.
- '2016년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계약'을 계약금
 147,266천원에 체결하였음.
- 2017년 토지편입 보상협의 등 사업을 추진 중, 인근 주민(동부삼성 아파트)들의 진출 램프 설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타절 정산 준공토록 조치하였음.
- 사업 취소로 당초 실시설계용역비 계약금(147,266천원)을 58,244천원으로 변경하여 용역 정지해제 및 준공처리함으로써, 1,000,000천원 예산중 58,244천원 집행하고 941,756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
- 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 설명회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였으며, 차후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시행하여 예산 낭비를 감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7 元	에 선 번 벽	시 눌 귀	이 별 각	금 액	비율	
2017	575,126,664,610	511,539,209,640	31,619,584,510	31,967,870,460	5.6%	
2016	534,928,018,890	457,883,648,960	45,900,627,610	31,143,742,320	5.8%	
2015	483,057,134,730	435,500,473,960	21,095,389,890	26,461,270,880	5.5%	

○ 2017년의 불용률은 5.6%로 전년도 대비 개선된 비율이나 금액적으로 약 8억원 가량이 증가된 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주요 미집행사업 현황

부 서	세부사업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총괄)	451,660,000	인건비 추계의 오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271,673,960	기업의 지원신청 미달
경제진흥과	애완견 만남의 광장	435,949,400	주민반대로 사업보류
	사회복지관 운영	157,932,400	인건비 차액
보기자케키	보훈대상자 지원	156,532,340	참전명예수당 차액
복지정책과	아동급식 지원	132,846,780	급식대상자 인원부족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189,388,390	인건비 차액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지원	353,502,940	지원대상자의 감소
- 구인국시과 -	자활근로사업 운영	220,078,710	지원대상자의 감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151,896,360	지원대상 시설의 사업포기
	경로당 임차	120,816,450	계약갱신 시 인상요인 해소
행복나눔과	출산지원금 지원	118,300,000	출산율 하락
	정부보조어린이집 인건비지원	330,863,260	아동 및 교사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	114,028,000	아동 감소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270,800,340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거부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237,970,000	집행 사업비 차액
건설과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	1,000,000,000	주민반대로 사업 보류
[신설과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사업	322,201,120	설계변경 등 차액
보건정책과	난임부부 지원	131,404,280	지원체계변경으로 대상자감소
<u></u>	국가예방접종 실시	432,758,210	일선병의원의 신청 감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118,049,880	채용시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

○ 경제진흥과의 '애완견 만남의 광장'사업과 건설과의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사업은 주민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복지정책과 및 행복 나눔과의 미집행사업은 지원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 잔액은 필요한 예산 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 하므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예산배정기관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해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집행 잔액 발생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 거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3)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일반회계 이월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7년	2016년
명시이월	19,671,295,430	29,788,086,970
사고이월	7,293,128,860	8,138,545,190
계속비이월	4,655,160,220	7,973,995,450
계	31,619,584,510	45,900,627,610

○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이 줄어들었으나, 사고이월금액은 상대 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부서별 주요 이월액 현황(이월율순)

(단위: 원)

부 서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토지정보과	801,938,000	507,520,000	63.3%
관광문화과	6,934,159,970	2,523,713,740	36.4%
안전총괄과	20,260,306,800	7,040,229,770	34.7%
교육협력과	15,860,636,200	4,368,010,690	27.5%
건강증진과	3,564,307,000	900,000,000	25.3%
건설과	28,832,599,280	6,822,245,340	23.7%

○ 일자리창출과의 '공동작업장 조정 및 운영' 사업은 주차장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616백만원 이월되었고, 행복나눔과의 '재 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해당법인의 재산처분 문제로 인한 부산시 고소건으로 375백만원 이월되었으며, 건설과의 '미포항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로 647백만원 이월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이월예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 절차의 지연, 보상협의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추경반영 등으로 발생하고 있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 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 감독이 필요함.
- 시설비의 경우, 보상 및 민원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 시 정확한 예산의 조직, 사업, 통계목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 여부 및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 하여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 증액 및 감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이 이용・전용・이체 및 예산의 이월 등 예산제도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세출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당해연도 말 결산과정에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 사업비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세 심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계약 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이월하는 일은 없어야 함.

(4)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 세외수입 환급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	115,678,601,000	126,874,496,000	135,849,558,000
징수결정액	147,089,708,470	160,611,261,175	158,277,762,245
수납총액	127,752,266,260	134,427,824,065	139,312,270,245
환급 본세	936,732,360	417,717,390	1,104,852,310
환부이자	30,726,760	14,025,010	15,381,920
환급액 합계	967,459,120	431,742,400	1,120,234,230
수납총액대비 환급액 비율	0.76%	0.32%	0.80%
실제수납액	126,784,807,140	133,996,081,665	138,192,035,915
결손액	2,983,635,640	2,863,534,720	3,018,839,230
다음년도이월액	17,321,265,690	23,751,644,790	17,066,887,100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환급액은 2016년에 비해 688,491,83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총액대비 환급액 비율도 2016년 0.32%에서 2017년 0.8%로 크게 증가하였음.

환급사유별 내역

(단위: 원)

구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계
행정기관 착오	293,826,130	425,672,770	719,498,900
납세자권리구제	1,886,990	143,775,110	145,662,100
납세자 착오	68,933,100	7,850,880	76,783,980
차량미등기	157,143,000	-	157,143,000
기타	8,900,530	12,245,720	21,146,250
합계	530,689,750	589,544,480	1,120,234,230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218,805,040원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환급액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과세전환신청에 따른 환급액임.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121,388,08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도유재산대부료 정산액으로, 시도유재산대부료를 시군구재산대부료로 착오 부과함에 따른 환급임.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272,000,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수욕장 파라솔, 샤워시설 사업자 등 운영관련 단체별 이행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해야 할 것을 세외수입(그외 수입)으로 착오 반영하여 정산한 것임.
- 납세자권리구제로 반영되어 있는 142,864,86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부과된 일시도로 점용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패소에 따 른 과오납 환급임.

[개선 및 권고사항]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발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과오납 환급액 발생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재정손 실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단위: 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율
2017년	연금지급금	14,737,000	2,096,230	12,640,770	85.7%
2016년	연금지급금	14,119,000	5,168,730	8,950,270	63.4%

- 세출예산 지출 내역의 특정업무 활동 지원 중 연금지급금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2017년 예산액 14,737,000원 중 집행잔액은 12,640,770원으로 85.7%이며, 2016년 예산액 14,119,000원 중 8,950,270원으로 63,4%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 열악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함.

3. 기금 분야

(1)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기금조성 및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사용비율	당해연도말 조성액
식품진흥기금	340,005,920	52,068,800	78,958,880	20.14%	313,115,840
사회복지기금	3,351,115,793	58,973,780	207,117,070	6.07%	3,202,972,503
자활기금	1,234,281,983	254,362,454	19,515,000	1.31%	1,469,129,437
양성평등기금	508,227,180	8,395,554	11,500,000	2.23%	505,122,734
재난관리기금	4,074,076,816	913,424,420	280,859,810	5.63%	4,706,641,426
신청사건립기금	7,687,848,304	431,552,920	-	0.00%	8,119,401,224
옥외광고정비기금	302,045,450	304,696,450	338,197,360	55.74%	268,544,540
합계	17,497,601,446	2,023,474,378	936,148,120	4.80%	18,584,927,704

 각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개별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조성액 대비 고유 목적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기금의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거 나,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4. 성과보고서 분야

(1) 2017년 성과보고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전년도)'와 2016년 결산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현년도)'가 상이함.

[예 시]

구 분 목표대비		2016년 결산서		2017년 결산서		
1 正	달성	15 달성성과	16 달성성과	16 달성성과	17 달성성과	
노인일자리	목표	1,965	2,246	2,230	2,230	
창출	달성	2,218	2,631	2,230	2,681	
차량방치 및 무보험	목표	740	740	670	650	
운행차량	달성	740	881	670	690	
불법자동차	목표	4	4	4	4	
일제정리단속	달성	6	6	4	4	

- 상기와 같이 열거한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주정차 단속 시스템 개선, 보훈회관 건립 진행률,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금, 장애인 지원자 수, 기초연금 지원자 수 등 많은 단위 사업에서 전년도 달성 성과에 2017년 결산서 상의 전년도(2016) 달성성과와 상이하게 입력.
- 성과보고서 작성 시(성과지표 달성 현황) 전년도 달성성과와 자동 연계 되도록 하는 등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의 개선 요구 등 정확한 작성이 요구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

[현황]

 사업소의 경우, '명품 해수욕장 및 사계절 즐길 거리가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와 고품격 공연 문화 조성, 구민과 공감하는 도서관 운영'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성과지표로 스마티비치 시스템 이용률, 시설 유지 관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기획공연 유치 건수, 구민 1인당 장서 수 등을 설정하였음.

[문제젂]

대부분의 경우, 전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당해연도 실적치가 손쉽게 초과달성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이 가능하도록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의 105%정도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계 또는 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현황 및 문제점]

 기획조정실의 경우,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성과 중심 행정 구현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라는 정책 사업 목표를 두고 있음.

정책사업목표 관련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율
성과관리 점검 평가 횟수(횟수)	분기평가 3회, 직무평가 반기 1회	5	5	100%
공약이행 평가 횟수(횟수)	분기평가3회, 직무평가 반기 1회	4	4	100%
등록규제 감축률(퍼센트)	감축건수/등록규제	10	10	100%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없이 손쉽게 목표달성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성과지표를 투입횟수 등을 주로 활용하여,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성과창출이라는 정책사업의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개선 및 권고사항]

정책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함.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1	담당부서		세무1과	-
시정 및	게이에서에 퍼져이 저저서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세입예산액 편성의 적정성	민정역구	0		

【지적사항】

[현황]

연도별 지방세 · 세외수입 예산현황 분석

(단위: 원)

구 분	20	14	2015		2016	
一 七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지 방 세	77,302,000,000	85,796,605,440	86,324,000,000	96,936,423,730	94,417,000,000	102,352,042,875
경 상 적 세외수입	18,903,088,000	20,359,080,740	22,140,865,000	24,521,198,420	22,213,115,000	27,055,000,720
임 시 적 세외수입	6,434,502,000	25,152,851,180	7,213,736,000	25,632,086,320	10,244,381,000	31,204,217,580
합계	102,639,590,000	131,308,537,360	115,678,601,000	147,089,708,470	126,874,496,000	160,611,261,175

지난 3개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은 2014년 28,668,947,360원, 2015년 31,411,107,470원, 2016년 33,736,765,175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 매년 본예산 편성시 지난년도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년도 최종 결정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임. 2016년도는 본예산 이후 3회의 추가경정을 거쳐 세입의 증가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재산세의 경우는 1회 추경시 50억원, 2회 추경시 37억원, 총 83억원을 증액 하였음에도 40억원이 추가 징수결정 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의 증대는 세출재원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세입예산액 편성시 전년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이분석을 한 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시경기활성화 및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반영함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징수결정・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세입예산 결정심의 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 고 세입규모를 조정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임.

【시정 및 조치결과】

- 예산의 편성은 지난연도의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본예산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매년 다음연도의 본예산은 9월에 편성, 결산추경은 11월에 이루어지므로 지난연도의 결산액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지난연도의 본예산을 기준으 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2016년도 특히 재산세의 경우 1회 추경시 50억원 및 2회 추경시 37억원을, 총 83억원을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따른 부동산 공 시가격의 대폭 상승입니다
 - ▶ 개별주택가격이 10.6%, 공동주택가격이 10.3%, 토지공시지가가 17.1%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비해 약 2배 상승,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도 비해 약 5배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단위 %)

구 분	공시가격	상승 률	부산시 평 균		
T U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평 균
개별주택가격	10.6	6.3	5.6		
공동주택가격	10.3	2.1	6.7		
토지공시가격	17.1	8.4	7.3		

- 그리고 재산세를 추경하고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 추가 징수결정 된이유는 2회 추경이후, 9월 재산세(토지분) 부과시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법인들의 년내 징수불능 우려로 세입예산의 편성을 보수적 산정한 결과 발생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입니다.
 - ▶ (주)엘시티피에프브이(6억), 우리저축은행(5억),(주)세가사미부산(3억),뉴선싸인(3억) 센텀사이언파크(2억4천) 등
- 지방세 세수추계 및 추경시 경기활성화 및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년대비 세수신장율 등을 세입추계 방식에 반영, 보완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 번	1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입예산액 편성의 적정성	반영여부	반영 O	미반영	검토중

【지적사항】

[혀 황]

연도별 지방세·세외수입 예산현황 분석

(단위: 원)

л н	20	14	2015		2016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지 방 세	77,302,000,000	85,796,605,440	86,324,000,000	96,936,423,730	94,417,000,000	102,352,042,875
경 상 적 세외수입	18,903,088,000	20,359,080,740	22,140,865,000	24,521,198,420	22,213,115,000	27,055,000,720
임 시 적 세외수입	6,434,502,000	25,152,851,180	7,213,736,000	25,632,086,320	10,244,381,000	31,204,217,580
합계	102,639,590,000	131,308,537,360	115,678,601,000	147,089,708,470	126,874,496,000	160,611,261,175

지난 3개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은 2014년 28,668,947,360원, 2015년 31,411,107,470원, 2016년 33,736,765,175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 매년 본예산 편성시 지난년도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년도 최종 결정된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임. 2016년도는 본예산 이후 3회의 추가경정을 거쳐 세입의 증가를 판단하여 반영하였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특히, 재산세의 경우는 1회 추경시 50억원, 2회 추경시 37억원, 총 83억원을 증 액하였음에도 40억원이 추가 징수결정 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의 증대는 세출재원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세입예산액 편성시 전년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이분석을 한 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시 경기활성화 및 지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반영함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징수결정・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세입예산 결정심의 시 정확한 세입추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세입규모를 조정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임.

【시정 및 조치결과】

- 예산의 편성은 지난연도의 결산액 기준이 아닌 본예산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은 세입 증가를 예상하여 3차례의 추가경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에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 □ 매년 다음연도의 (본)예산은 9월에 편성하며 결산추경은 11월에 이루어지
 □로 지난연도의 결산액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지난연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 ▷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징수결정
 액대비 세입예산의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음.
- ▷ 지방세 세수추계시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중앙정부 감면정책 등 여러 세수상황을 예측하고 세입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년 대비 세수신장율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세입 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세무2과에서는 해당 실과의 세외수입 통계자료 취합과체납정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 그러나, 해당 실과의 세외수입 담당자와 세무2과(세외수입팀)간의 유기적인 협
 조를 통하여 향후 예산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시 징수가능액이 최대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 번	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정 및	이 다니다 나는 나는 아니라 하지만 하는데 하다	비선식보	반영	미반영	검토중
시정 및 개선사항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로 인한 예비비 사용	인정역구	0		

【 지적사항】

- 해운대모래축제 예비비 지출
 - 지출결정액 301,153,000원, 지출액 294,895,710원

【 시정 및 조치결과 】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 해운대모래축제를 진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3억원 가량의 예산초과지 출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음.
- 향후 예측가능한 행정수요의 경우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연 번	2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시정 및 개선사항	에서 나라는 이번 다른 보고 이렇게 되었다.	바여러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해운대모래축제 예산초과로 인한 예비비 사용	건강역구	0		

[현황]

해운대모래축제는 해운대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 편성과 예산 초과지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함.

【시정 및 조치결과】

-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축제 전반을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예산 내에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해야 함.
 - ☞ 2017년 해운대모래축제 주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하였음
 - ▷ 공모기간 : '16. 10. 13. ~ 10. 21.
 - ▷ 공모결과 : (사)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선정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대행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보고 평가하여 가격을 협상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한 지출이 생기는 것을 줄여야 함. 축제 진행에 따른 지출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 2017년 해운대모래축제 수탁사업자 제안심사 실시 : '17. 2.17.
 - ☞ 2017년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용역 계약 실시
 - ▷계약일시 : '17. 5. 8.
 - ▷ 계약내용 : (사)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주)CJ헬로비전

연 번	3	담당부서	_	·광문화 설관리	•
시정 및	이바람게 지해자에 취소하이 피스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의 필요성		0		

【지적사항】

○ 동백섬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문화재현상변경심의결과로 인해 120m에서 28m로 변경 조성되면서 총 사업비가 13억에서 9억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정 및 조치결과】

- 당초 사업 추진 중 6개월여에 걸친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과정에서 문화재및 자연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여러차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규모가 120m에서 28m로 축소 의결되었고,
- ○국비지원(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축소된 규모만큼의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 지시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4억은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로 비율에 맞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집행잔액 아님.
- ※ 사업비 매칭 현황 (국비: 시비 : 구비 = 50 : 25: 25)
- (당초) 13억(국비 6.5억 시비 3.25억 구비 3.25억)
- (변경) 9억(국비 4.5억 시비 2.25 시비 2.25)
- (반납) 4억(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연 번	3	담당부서	일자리창 출 과		
	시정 및	이바람계 지해자에 취소하이 피스성	ਮਾਯੁਯ ਸ	반영	미반영	검토중
l	개선사항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의 필요성	반영여부		0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중 일자리창출사업지원은 인건비적 성격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중 상하반기 1회씩 공모를 거쳐 시에서 선정하면 구와 약정체결(1년) 후 지원 함
- □ 배정된 참여근로자최저임금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매월 지원하며
 -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은
 - 예비: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으로써 예비3년+인증5년 총 8년이내 5년까지 지원 가능
- □ 업체가 공모를 신청안하는 경우가 있고 구간 업체 전출입이 있으며, 또 업체당 배정된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 □ 또한 구별 예산배정은 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주는 국비에 부산시가 시비를 75:25로 매칭하여 16개 구군별로 조정하여 예산을 배분하므로 매년 집행잔액의 격차가 심함.

연 번	3	담당부서			
시정 및 일반회계 집행잔액 최소화의 필요성	비선식보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일반되게 집행산액 최조와의 필요성	반영여부	0		

- □ 건설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대부분은 송정터널 보도설치예산 미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사업비 20억원이 예상되는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특별교 부세 5억원 확보, 15억원 미확보)를 BRT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 도로여 건 파악후 장기적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송정해수욕장 일원 보도정비사업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음.
-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경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음.
- □ 이외 공사계약 낙찰잔액, 공사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으며 기 확보된 예 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연 번	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정 및	⊐L⊏ሕ⊦ Ω αΙ ι Ͱዝ⊦	바여서 비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과도한 용역 남발	반영여부	0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해운대 짚 와이어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5.1.30. ~ 2015.5.20.

○ 용역금액: 19,835,200원

○ 수행기관 : (주)포스코 에이엔씨 건축사무소

○ 주요과업내용: 짚와이어 기본구상, 상위계획 및 법규검토, 경제성 분석 등

2. 용역추진 배경

- 사계절 체험형 즐길거리(관광상품) 개발로 관광도시 명성제고
- 짚와이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사업규모 대비 수익성 등) 운영방법,
 재원 조달 방안 지역파급 효과 등 타당성 종합 검토

3. 용역결과 및 추진사항

- 용역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 후속조치로 사업제안자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거한 '민자사업 및 재무분석 용역'예산을 상정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

4. 향후계획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 여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성이 마련되면 민자사업 및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을 재검토 함.

연 번	4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시정 및	⊐ኒ⊏ሕ⊦ Ω cd ι l-нŀ	ਸ਼ਹਿਕ ਮ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과도한 용역 남발	반영여부	0		

- 석대동 162번지 일원 15,310㎡ 부지에 반송동 실외체육시설(워터피아) 조성사업을 위한반송동 실외체육시설(워터피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2014.10월)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전체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포함(2015.12월)
- 센텀2지구 산단진입로가 사업부지내 통과 예정으로 부지활용도가 낮고 워터피아 시설 조성 제한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 업방향과 연계 등 재검토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추진 중단
- 광역시 차원의 개발계획에 의한 자치구 실외체육시설 추진사업 중단
 으로,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
- 추후 다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위치선정(개발구역 및 제한구역 여부) 및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를 전제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연 번	4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과
시정 및	과도한 용역 남발	바다어서버	반영	미반영	검토중
시정 및 개선사항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반성서구	0		

【지적사항】

- ○위의 용역 계약건과 같이 용역 완료 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사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줄지 않고 있음. 일부의 주관된 판단과 성급한 추진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러한 용역 남발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까지 이어져 심각한 손해를 떠안는 상황임.

【시정 및 조치결과】

- ○달맞이언덕 관광활성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14. 1월), 여러 제안사업 중 친환경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하늘숲길 조성사업 제시
-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하늘숲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15.8월)이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에 대해 민자사업 공모('15.8월) 추진, SPC설립('16.2월, ㈜해운대블루라인)하여 동해남부선 폐선구간(4.8km)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구에서는 ㈜해운대블루라인의 블루라인파크 사업에 하늘숲길 사업을 포함(일부)토록 협의, 사업비 과다 등으로 난색 표명과
- ○㈜해운대블루라인에서 시민계획단 의견수렴(완료-개발최소화 공원확대 등), 완충녹지 해제, 공원계획변경 등의 사전 행정절차와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추후 별도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나 연내 해결 불투명(예견)
- 하늘숲길 대상사업지(청사포수변공원구역)는 2020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일몰법에 따라 부산시가 매수 의무가 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난항 예상
- 향후 재정사업 등 추진시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검토와 협의 등을 통해 불측의 상황들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연 번	4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라
시정 및	⊐L⊏ሕ⊦ Ω Od ι }ዝ⊦	바여서 비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과도한 용 역 남발	반영여부	0		

【지적사항】

- 용역 완료 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사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줄지 않고 있음. 일부의 주관된 판단과 성급한 추진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결국 이러한 용역 남발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까지 이어져 심각한 손해를 떠안는 상황임.

【조치결과】

○ 용 역 명 :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계약기간 : 2016.10.24.~11.8 / 2016.11.28.~12.23

○ 계약금액 : 9,700천원 / 19,575천원

○ 공사미시행 사유 : 사업대상지 인근 좌동 지역주민 집단반발(아파트입 주자

대표 및 경로당, 초등학교학부모회 등) 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되었 음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 현재 사업대상지는 착공이 가능한 빈 공간으로 되어있음
 - ▷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민쉼터와 체육시설 등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연 번	4.과도한 용역남발 6.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집행현황	담당부서	<u></u>	<u>.</u> 통행정	과
시정 및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와 위치선정	ਸ਼ੀਯੋਯੋ ਸ	반영	미반영	검토중
	및 효율성 여부 등 면밀히 조사 후 진행	반영여부	0		

1. 용역개요

O 용 역 명 : 달맞이길 해월정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O 용역위치 : 중동 해월정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일원

O 용 역 비: 55,510천원

○ 용역기간 : 2015. 4. 6 ~ 2015. 12. 18 ○ 용 역 사 : ㈜정일기술단 대표 이강석

2. 용역목적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설:주차장) 실시설계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월정공영주차장의 지하층을 확보하여 상부에 일반차량 및 대형관광 버스를 위한 주차장 증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늘푸른과에서 달맞이길 일원의 도로확장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방안이 검토보고 되어 달맞이길 확장(L=120m, B=10m→18m) 추진으로 변경됨.

※ 달맞이길 버스베이 조성사업

- ▶ 사업개요(건설과 시행)
 - 사 업 명 : 달맞이길 버스데이 조성사업
 - 위 치 : 해운대구 중동 산27-2번지 일원
 - 사업개요 : 도로확장 L=240m, B=10m→18m, 버스베이 조성 1식
 - 사 업 비 : 850백만원(구비)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6. 6월
- ▶ 사업중단 사유
 - 인근주민(민원)과 시민단체의 협력 거부

3. 개선사항 반영

O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와 위치선정, 효율성 여 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행

연 번	4	담당부서	늘푸른과		
시정 및	⊐L⊏ሕ⊦ Ω Od ι }ዝ⊦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과도한 용역 남발		0		

【지적사항】

년도	계 약 명	총계약금액	부서명
2015	명품 자동차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14,250,000	늘푸른과
2016	2016년 좌동양묘장 철거 폐기물처리	5,000,000	늘푸른과
2010	2016년 좌동양묘장 철거 폐기물처리	11,203,400	늘푸른과

○ 위의 용역 계약건은 용역 완료 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사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으로 일부 주관된 판단과 성급한 추진으로 용역을 남발하여 예산 낭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까지 이어져 심각한 손해를 떠안은 상황임

【시정 및 조치결과】

- 관광특구 해운대의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모터쇼와 연계한 자동차 특화 거리 조성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학술 연구 용역을 한 사항으로 용역 결과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 조달과 도시계획사업 상 토지수용, 보상, 부동산 투기 등이 예상되어 잠정보류 장기검토사항인 사안으로서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재정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한 순수연구 노력한 사항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차후 좀 더 신중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좌동양묘장은 수목폐기물 파쇄 및 폐기물 처리 용도로 사용해오다가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검토되어 기존에 있던 잔재물 및 폐기물을 치운 것으로 해당 년도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어차피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시기를 앞당겨 지출한 것으로 예산낭비적인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연 번	4	담당부서			
시정 및	⊐L⊏ሕ⊦ Ω Od ι }ዝ⊦	바다 역 시 되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과도한 용역 남발	반영여부	0		

용역완료 후 공사시행 못한 건 (2014년~2016년)

(단위: 원)

년도	연 번	계 약 명	총계약금액	부서명
2014	1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81,744,000	건설과
2014	2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78,512,000	건설과
2015	3	달맞이길 일원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750,000	건설과

▶ 용역 완료후 공사 미시행 사유 ◀

- ①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는 BRT사업 등이 완료된 이후 도로여건 파악 후 장기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 미시행하였음.
- ② 2014년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미포지역개발 실시설계용 역이 아닌 향후 미포지역개발 구상계획 용역으로 과도한 용역남발 해 당사항 아님
- ③ 달맞이길 일원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로확장구간 인근 주민 과 시민단체의 협력거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공사 미시행하였음.

과도한 용역남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를 전제로 사업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위치선정(제한구역 여부) 및 효율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진행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하겠음.

	연 번	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시정 및	특별회계 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l	개선사항	극글외계 세립증의 중 구립할 제고	건경기구	0		

【 지적사항 】

- □ 특별회계·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 O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위: 천워,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TT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5,663,710	8,768,347	4,551,825	8,751,799	4,828,132	8,484,294	
수 납 액	3,833,036	1,499,488	3,171,483	1,284,430	3,327,602	1,416,665	
미수납액	1,830,674	7,268,859	1,380,342	7,467,369	1,500,530	7,067,629	
수납비율	67.7	17.1	69.7	14.7	68.9	16.7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8,568,159천원, 지하수이 용부담금 1,740,942천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변상금 및 임대료 57,624천원으로 특히 전년도 수납비율을 보면 1%미만 부서도 있어 수납율 제고와 세입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전직원에게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여 납부독려,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행정제재 등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정 및 조치결과 】

- □ 2016년도 세입예산 미수납액 : 8,568,159천원(불납결손액:321,090천원)
 -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의 대부분(95.5%)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발생함.

연 번	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과
시정 및	트벼하게 제이즈에 미 스나ㅇ 제그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특별회계 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0		

○ 2016년 주정차 체납액(미수납액): 8,247,069천원

> 15년 0월 체납 8,487,165천원 - 징수액 1,416,665천원 - 결소 321,090천원 + '16년 현년도 체납 1,500,530천원 = **8,247,069** 천원

년도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0전
체납액 (천원)	8,247,069	1,500,530	900,832	1,071,852	991,891	800,993	2,980,971

- O 체납고지서 독촉장 정기적 발송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게 연6회 이상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체납액 납부율을 최대화
- 최근 체납자료뿐 아니라 1990년도 이후분에 대한 모든 체납에 대해 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 조치
- O 부동산·차량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뿐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 조치
- O 체납차량 번호판 정리
 -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과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O 징수불능 체납액의 적기 결손처분 실시
 -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징수불능 체납액 적기에 결손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

연 번	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과
시정 및	트변하게 제이즈에 미 시나이 제그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특별회계 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0		

- O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처리
-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강력한 채권 압류 조치로 적극적으로 체납과태료 징수
- O 법인명의 및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 법인 및 외국인 체납자의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주소지 갱신 후 체납 고지서 발송 등 체납관리 철저
- O 위와 같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관리를 통해 납부율을 최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강화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연 번	5	담당부서	건설과		
시정 및	E 배워게 게이즈에 미 시나이 케그 및	바다	반영	미반영	검토중
시정 및 개선사항	특별회계 • 세입증액 및 수납율 제고	반영여부	0		

□ 지하수이용부담금(건설과)

(단위: 천원, %)

д н	20	14년	201	5년	201	6년
구 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194,592	1,484,583	178,558	1,679,175	177,926	1,857,733
수납액	177,851	96,502	158,341	113,169	161,314	133,403
미수납액	16,741	1,388,081	20,217	1,566,006	16,612	1,724,330
수납비율	91.4	6.5	88.7	6.7	90.7	7.2

지하수이용부담금 수납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후 체납자 납부독려, 재산조회 및 압류 등 행정제재 처분을 통해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참고: 지하수법 제30조의3 5항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자는 지방세외수 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라 독촉, 압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음]

	연 번	5	담당부서	주	주민복지과	
	시정 및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징수 분석 빈	바다	반영	미반영	검토중
l	시정 및 개선사항	극결의계 급기식에서구립 경구 군식	민정역구	0		

【 지적사항】

(단위: 천원)

미수납액	사ન	우별
비구합객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
1,530,416	576,223	954,193

- 미수납액 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954,193천원으로 분석한 결과
 - 개인 3명 11,159천원 병의원 5곳 943,034천원으로
- 기초수급자는 분할납부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환수 불가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된 채권은 결손 처분하고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하여 는 재산 추적조사 등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징수에 특별히 노력 바람.

【 시정 및 조치결과 】

- 부당이득금 체납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으로 상환 할 능력이 어려우며, 납부하더라도 월1~5만원 분납을 하여 징수율이 저조함.
- 의료기관의 경우는 특히 주기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발견 시 즉시 부동산, 차량 압류 등 조치 및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있음.
-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 적극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 다만, 징수한 부당이득금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5항에 의 거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고 있음.

연 번	5	담당부서			
시정 및	특별회계 · 세입증액 및 수납율 증대	바여억	반영	미반영	검토중
시정 및 개선사항	국물와계 : 세립공액 및 구립 할 공 네 	민정역구			0

□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상금 및 임대료(건축과)

(단위: 천원, %)

구 분	20	14년	201	5년	201	6년
TE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징수결정액	34,764	9,826	26,929	42,396	20,478	50,550
수 납 액	25,894	2,524	18,695	225	13,260	144
미수납액	8,870	7,302	8,234	42,171	7,218	50,406
수납비율	74.5	25.7	69.4	0.5	64.8	0.3

- 주거환경개선지구(반송,반여,재송동) 특성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납부자 중 대다수가 주거환경개 선지구에 거주중인 실정이므로, 수납율 증대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 본 자료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 매년 수납비율이 감소하는 실정임.
- 특히, 전년도 수납비율은 2015년,2016년도 기준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따라서, 전년도 미수납 금액 및 현년도 부과금에 대해 납부독려, 독촉 등 세입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세입증대토록 하겠음

연 번	7	담당부서	<u>o</u>	l회사무·	국
시정 및	설정근거가 미흡한 성과지표와	바여서버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반영여부	0		

O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측 정 방 법	목표치	실 적
의사운영 지원 횟수(회)	회의록 발간 횟수	6	8
의사군장 시천 첫구(외)	회의 개최 횟수	6	8
의정수행활동 지원 횟수(회)	도서 구입 수량	85	105
의정활동 홍보 지원 건수(회)	신문·잡지 등 언론 노출 회수	5	10
국내외 연수 실시 횟수(회)	국내외연수・국제교류행사 참가횟수	8	8

O 문제점

▷ 성과지표와 그 측정방법이 의사운영지원횟수 등 전부 횟수(회)로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특히, 국내외 연수 실시 횟수라는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지표로 부적절해 보임.

O 조치결과(계획)

- ▷ 정책사업목표인 『의원역량 제고를 통해 구정발전을 이끌어 나간다』정책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개선토록 추진.
- ▷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성과를 잘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
 - 예) 의원연수 벤치마킹 구정접목 건수
 - 의정활동 정보 공개 건수 등

연 번	8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시정 및	전체기어무표 범건성적 비선	바요어ㅋ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정책사업목표 변경설정	반영여부	0		

[혀 황]

○ 행정관리국의 정책사업목표 중 '주민과 함께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 및 육아를 위한 근무 환경 향상과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도시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임.

[문제점]

 행정지원과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충원을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도시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주민과 함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과의 연관성이 부족함.

[시정 및 개선사항]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근무환경 향상 및 자치단체 교류를 통 한 선진행정을 구현한다.'로 정책사업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연 번	8	담당부서	뵬	복지정책과	
시정 및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바여서버	반영	미반영	검토중
개선사항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	민정역구	0		

【지적사항】

○ 주민생활지원국의 '취약계층 아동의 적극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도모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에 합당한 성과지표로 변경 필요

【시정 및 조치결과】

- 2016 성과지표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증가율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의 저변확대를 표현하는 지표
 - 어린이 놀이터 보수율
 - 노후화방지를 통한 안전성 도모의 가장 현실적인 지표
- 2017 성과지표 변경 예정으로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음. ⇒변경 전
 - ○취약계층 급식제공 아동수 증가율
 -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제공의 확대를 표현하는 지표
 - 이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교육 참여율
 - 참여율을 높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표

⇒변경 후

- ○취약계층 돌봄지원아동 증가율
- 아동복지시설 및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표
- ○취약계층 급식제공 아동수 증가율
-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제공의 확대를 표현하는 지표